의안번호	2202915
의 뢰 인	윤종군 의원
회 답 일	2024.08.29.
추계번호	24C2920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총 2,548억 4,800만원(연평균 283억 1,6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제정안(일부추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4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 계
의과대학 설립	3,778	44,371	45,916	-	-	-	-	-	-	94,064
부속병원 설립	2,293	27,562	55,314	-	-	-	-	-	-	85,168
의과대학 운영	-	-	-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75,615
계	6,070	71,932	101,230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254,848

주: 1)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3)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율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4)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5)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설치)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2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의료인의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을 통한 의료인 양성 및 부속병원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의료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6조(예산지원 등)	(제1항)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서 수행하는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5	안 제8조(학비등의 지원)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9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1항)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퇴학한 사람 2.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원한다. (제4항) 그 밖에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3조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와 경기도지사는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기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4조 (의무복무 의사 병원 개설 시 지원)	국가와 경기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가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간호사 등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행정인력 고용 지원,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5조(기금의 조성)	(제1항)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항)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설치) 안 제5조(입학정원) 안 제6조(예산지원 등)	○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2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기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3	안 제8조(학비등의 지원)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학비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대학별 입학금과 수업료간 차이가 있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학생의 비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비용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4	안 제9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	·제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은 사람이 퇴학 등을 한 경우 지원 받은 학비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해당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의 증가에 대한 사항으로 추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1]
5	안 제13조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의무복무 의사 병원 개설 시 지원)	×	·제정안은 국가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 지원의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또한,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가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규모 내역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7	안 제15조(기금의 조성)	×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세액공제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8	안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안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	·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사용·수익 등이 실시될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가액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또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용·수용이 필요성 여부 및 필요재원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의과대학)** 제정안은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으로 가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2]에 따라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므로 학생이 모두 충원될 경우의 총 정원은 600명으로 함
- 안 제6조에서 국가가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로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의과대학병원)** 의과대학병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500병상으로 가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3]에 따라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두어야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4]
-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2024)을 통해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의과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유효병상 수를 500병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의과대학에도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두는 것으로 가정

○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 건립비용)** 건립비용은 공사비, 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및 기타투자비로 구성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부속병원 건립비용의 국고지원율은 25%로 가정함

---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4)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등에 따라 입학정원 모집정지(1차위반) 및 학과 폐지(2차위반) 등의 제재를 받게 됨

- 건물의 설립부지는 의과대학이 설치될 한경국립대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토지매입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건물 공사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은 제외하고 추계
- 기타 투자비의 경우 의과대학은 집기비품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부속병원은 집기비품비와 함께 의료장비비 및 전산시스템구축비와 개원 전 1개월분의 운영비[5]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공사비와 기타 투자비는 교육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준용하며, 부대경비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

○ **(의과대학 운영 비용)**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추계하며, 운영 비용은 건물 건립 완료 후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는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는 교원·조교·직원(이하 "교직원")으로 나누어 추계하고[6], 「대학설립·운영 규정」[7]에 따라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는 2029년에 기준 교직원 수의 50%를 확보한 후 누적 재학생 수(매년 100명씩 증가)에 연동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직원의 경우 계약직 등을 제외하고 국가재정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에 대해서만 추계
- 기본경비는 대학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상경비[8]로 인건비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사용되는 실험실습기자재비 취득 금액으로 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의과대학 설립시 기숙사가 함께 건립·운영될 수 있으나, 제정안에 기숙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과대학 기숙사 건립 및 운영비용은 추계에

---

5)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학병원 국고 지원 지침」에 따르면, 신설병원 개원 전·후 운영비(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순수 운영비) 3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국고지원율 100%)

6) 국고지원 100%로 가정함

7)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8)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식비, 여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등

서 제외함[9]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으로 함

○ 2026년부터 2028년까지(3년간) 건물 건립을 진행하고 2029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으로 하며, 의과대학은 6년 과정으로 2034년에 총 정원 600명이 모두 충원되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의과대학 건립 비용**은 공사비·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기타 투자비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산출

○ **(공사비)** 총면적에 면적(㎡)당 공사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년간(2027~2028년) 연도마다 총 공사비의 50%씩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 학생 1인당 교사면적(44.5㎡) × 학생 수(600명) × 면적(㎡)당 공사단가 = 876억원
-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은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의 1인당 평균 교사면적(기숙사 제외)인 44.5㎡를 적용[10]
- 면적(㎡)당 공사단가는 2021년 부산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신축공사의 면적당 공사단가 2,470,853원(2021년 기준)에 비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11]적용

○ **(설계비)**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

9) 안 제7조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기숙사비' 지원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 필요적으로 기숙사 건립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함

10)「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3] 교사기준면적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20㎡이나,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해당 계열의 대학이 만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다른 의과대학 중심의 캠퍼스를 기준으로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함. 의학계열 대학 위주로 설치된 캠퍼스로 국립의과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대구 중구),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있으며, 사립의과대학 중에는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가톨릭대학교 성의캠퍼스, 고신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가 있음. 도서관, 식당, 동물실험실 등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캠퍼스의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의 1인당 교사면적(기숙사 제외)의 평균인 44.5㎡를 적용함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2015~2024년) 평균값 적용

(건설공사비지수: 매년 3월 기준, 2015년=1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주거용건물	100.13	100.41	106.14	110.42	115.65	117.05	125.31	143.03	149.88	153.21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12][13]을 곱하여 산출

- 설계는 2026년에 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건축공사비에 직선보간법[14]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 요율 4.312을 적용
- (설계비) 공사비(876억원)×설계비 요율(4.312%)= 37.8억원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건축감리 대가요율(1.072)[15] 및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0.23) 곱하여 산출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개 연도(2027~2028년)에 걸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
- (감리비) 공사비(876억원) × 감리비 요율(1.072%)= 9.4억원
- (시설부대비) 공사비(876억원) × 시설부대비 요율(0.23%)= 2억원

○ **(기타 투자비)** 총면적에 면적(㎡)당 집기비품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8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집기비품비) 총면적(26,700㎡)[16] × 면적(㎡)당 이공학계열 집기비품비 단가[17] (57,860원) = 15.5억원

○ 이에 따른 의과대학 건립 비용의 총합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940억 6,400만원으로 추계

---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500억원 및 1,0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억원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원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자료: 국토교통부

13) 종별 구분을 3종(복잡)으로 적용하였고, 설계도서량 구분은 중급으로 적용

14) 직선보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요율(%) = Y_1 − {(당해 공사비 - X_1) × (Y_1 − Y_2) / (X_2 - X_1)}

(X_1: 작은 금액, X_2: 큰 금액, Y_1: 작은 금액 요율, Y_2: 큰 금액 요율)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감리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500억원 및 1,0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자료: 국토교통부

16) 총면적은 공사비 산정에 사용된 1인당 교사면적에 총 정원을 곱한 전체 연면적임

17)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른 이공학계열 집기비품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표 2] 의과대학 건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공사비	-	43,800	43,800	87,601
부대경비	3,778	570	570	4,918
기타 투자비	-	-	1,545	1,545
계	3,778	44,371	45,916	94,064

주: 1) 건립 비용별 연평균 금액은 비용이 발생한 연도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2)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3)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4) 건물 건립 비용에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과대학병원 건립 비용**은 공사비·부대경비·기타 투자비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비용을 합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한 후 국고지원비율(25%)을 곱하여 추계

○ **(공사비)** 총면적에 면적(㎡)당 공사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년간(2027~2028년) 각 연도마다 총 공사비의 50%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병상 1개당 연면적(138.1㎡) × 총 병상(500병상) × 면적(㎡)당 공사단가 = 2,177억 6,400만원
- 병상 1개당 연면적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18]를 참고하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은평성모병원, 이대서울병원 및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의 병상당 평균 연면적인 138.1㎡을 적용
- 면적(㎡)당 공사단가는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19]에 따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의 면적당 평균 공사단가(2021년 기준)에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설계비)**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20]을 곱하여 산출

- 설계는 2026년에 하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건축공사비에 직선보간산정식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 요율 4.211를 적용
- (설계비) 공사비(2,177억 6,400만원) × 설계비 요율(4.211%) = 91억 7,030만원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18)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2021.4.
19)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2021.4.
20) 종별 구분은 3종(복잡)으로 적용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건축감리 대가요율(1.046) 및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0.206) 곱하여 산출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개 연도(2027~2028년)에 걸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
- (감리비) 공사비(2,177억 6,400만원) × 감리비 요율(1.046%)= 22억 7,900만원
- (시설부대비) 공사비(2,177억 6,400만원) × 시설부대비 요율(0.206%) = 4억 5,000만원

○ **(기타 투자비)** 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구축비 및 개원 전 운영비(1개월)로 구성되며 2028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의료기기 투자비(561억 1,000만원) + 집기비품 투자비(39억 3,500만원) + 전산시스템 구축비(205억 9,500만원) + 개원 전 운영비(75억 9,200만원)
- 각 비용은 유사사례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21]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국고지원율)**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율은 25%로 하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학병원 국고 지원 지침」에 따르면 병원 신축 비용에 대한 기준 국고지원율은 25%(단, 개원 전 운영비는 100% 지원)

○ 이에 따른 부속병원 건립 비용의 총합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851억 6,800만원으로 추계

[표 3] 부속병원 건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합계
공사비	-	27,221	27,221	54,441
부대경비	2,293	341	341	2,975
기타 투자비	-	-	27,752	27,752
계	2,293	27,562	55,314	85,168

주: 1) 실제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연도별 연부액 비율을 50%로 가정함
3) 건물 건립 비용에는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4) 국고지원율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1)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2021.4.

❑ **의과대학 운영 비용**은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

○ **(교직원 수) 교원**의 경우 「대학설립 운영·규정」[22]에 따라 총 75명[23](=정원 600명 ÷ 교원 1인당 학생 수 8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2029년에 38명(교원 수의 50%)을 확보한 후 2030년부터 추계기간동안 매년 7~8명을 신규 채용하여 2034년에 75명 확보가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조교와 **직원**은 교원 대비 조교·직원의 인원 비율에 따라 교원 수에 연동하여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교원 대비 조교와 직원의 인원 비율은 2024년 교육부 확정예산에 따른 봉급 지급 대상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24]

[표 4] 의과대학 교직원 수 추계

(단위: 명)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교원	38 (38)	45 (7)	53 (8)	60 (7)	68 (8)	75 (7)
조교	6 (2)	8 (2)	9 (1)	10 (1)	12 (2)	13 (1)
직원	14 (14)	17 (3)	20 (3)	22 (2)	25 (3)	28 (3)
계	58 (58)	70 (12)	82 (12)	92 (10)	105 (13)	116 (11)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신규 채용 인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교원·조교·직원별로 채용 인원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

– (1인당 인건비) 2024년 교육부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라 1인당 평균 인건비[25]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26]과 기관부담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공무원연금) 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연도별 인건비 단가를 산출

– 산출된 인원수에 교원·조교·직원별 1인당 인건비를 곱하면 총 인건비는 2029년 66억 2,090만원, 2034년 153억 7,100만원 등 2029년부터 2034년까지 6년간 총 650억 7,700만원으로 추계

---

2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별표 5] 교원산출기준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명	20명	20명	20명	8명

23) 교원 수 75명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이므로, 실제 의과대학이 설치될 경우 채용 규모는 이보다 증가할 수 있음
24) 2024년 교육부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교원 대비 조교·직원의 비율(봉급 지급 인원 기준)인 18.1%, 38.1%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
25) 교원·조교·직원의 인건비에는 봉급과 정근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가 포함됨
26) 정부의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을 준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정부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에서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처우개선율과 호봉 상승 등 승급효과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민간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 5] 의과대학 교직원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인건비	6,621	8,178	9,905	11,505	13,497	15,371	65,0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인건비에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2024년 교육부 확정예산에 따른 국립대학 인건비 지원 예산액 대비 국립대학 기본경비 지원 예산액의 비율을 적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의과대학 기본경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기본경비	584	721	873	1,015	1,190	1,355	5,7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2021년 기준 국립대 의과대학이 보유한 실험실습기자재의 평균액을 3년(2029~2031년)에 걸쳐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현재 정부가 국립대학 보유 기자재 중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기자재에 대해서만 확충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한 이후 3년간(2032~2034년)은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실험실습기자재 취득비는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라 국립대 8개교 의과대학[27]의 실험실습기자재 평균 보유액(48억원)을 적용

[표 7] 의과대학 자산취득비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1,600	1,600	1,600	4,800

주: 자산취득비는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에 따른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총합은 2029년부터 2034년까지 6년간 총 756억 1,500만원으로 추계

27)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표 8] 의과대학 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인건비	6,621	8,178	9,905	11,505	13,497	15,371	65,077
기본경비	584	721	873	1,015	1,190	1,355	5,739
자산취득비	1,600	1,600	1,600	-	-	-	4,800
계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75,615

주: 1)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대상 교직원의 수와 채용 형태·시기 및 호봉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3) 각 항목별 연평균 금액은 비용이 발생한 연도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4) 자산취득비는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5) 자산취득비로는 실험실습기자재비만 고려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비 외 다른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총 2,548억 4,800만원으로 추계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4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 계
의과대학 설립	3,778	44,371	45,916	-	-	-	-	-	-	94,064
부속병원 설립	2,293	27,562	55,314	-	-	-	-	-	-	85,168
의과대학 운영	-	-	-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75,615
계	6,070	71,932	101,230	8,805	10,499	12,378	12,519	14,687	16,727	254,848

주: 1)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2)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3)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율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4)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5)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